◉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32호

시정권고 재결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7호(낚시어선 인성호 · 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인성호 · 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백**(****. *. ***)

경*** *** **** **, **** *****

귀하가 조종사로 승선하고 있는 모터보트 윤진호가 2025. 10. 27. 13:36경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31분 3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인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인성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